

대구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가단13351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11. 24.

판 결 선 고 2022. 12. 8.

주 문

1. 피고와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지분에 관하여 2020. 4. 6. 체결된 합의분할에 의한 상속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20. 4. 13. 접수 제6198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채권

- 1) E카드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256156 신용카드이용대금 등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6. 19. 송달되었고, 2019. 7. 3. 확정되었다.
- 2) E카드는 2021. 4. 21.자 자산매매계약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D에 대한 채권 및 이에 수반하는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통지를 D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 3) 원고가 D의 채권을 양도받은 액수는 2022. 8. 9. 기준으로, 30,364,805원과 각 그 중 11,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9%, 15,755,059원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7%, 375,320원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50%, 2,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다.

나. D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

- 1) D은 금융권 16곳에 255,472,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자신의 2/1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4. 6. 피고와 협의분할 약정(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2020. 4. 13.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2) D은 2022. 9. 30. 대구지방법원 2022개회20797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다(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개시신청 기각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D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데도 2020. 4. 6. 피고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악의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해의사가 없었 다는 항변을 한다.

그러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피고가 선의였다는 사실은 피고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자신이 선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변제계획안 제출

피고는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변제계획안을 개인회생절차에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까지 D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열

별지**부동산의 표시**

1. 대구 북구 F에 있는 G건물 H동 제2층 I호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 북구 F에 있는 G건물 H동

[도로명주소] 대구 북구 J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아파트 H동

1층 980.24㎡

2층 740.48㎡

3층 740.48㎡

4층 740.48㎡

지하 680.9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대구 북구 F 대 2081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I호 철근콘크리트조 84.91㎡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20814분의 116.19

(위 부동산 중 3번 C 지분 2분의1)

- 이 상 -

